

분할보고 공고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는 2017년 7월 31일 주주총회 결의로 ‘투자업 및 기타 서비스업부
문’, ‘웹에이전시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당사는 존속하
기로 하고, 위 결의에 기하여 상법 소정의 분할절차를 완료하고 상법 제530조의11 및 동법 제526
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와 이 공고로서 분할보고총회를 갈음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분할
완료사실을 주주들께 아래와 같이 이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아 래-

1. 분할의 내용

가. 분할의 방법

아래와 같이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의 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각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함

분할되는 회사	분할신설되는 회사1	분할신설되는 회사2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15,16층(상암동, 프리즘타워)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앤엠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15,16층(상암동, 프리즘타워)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사업부문 (콘텐츠유통사업 등)	투자업 및 기타 서비스업부문	웹에이전시부문

* 분할대상부문1의 투자업 및 기타 서비스업 부문은 분할되는 회사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 관련 서비스업], [전자상거
래업 및 기타 통신판매업], [부동산임대업], [광고대행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
업], [전시 및 행사 대행업]과 관련되는 투자 및 서비스임.

* 분할대상부문2의 웹에이전시부문은 분할되는 회사의 [방송프로그램, 영화, 비디오물, 오디오물 제작업/배급업/제작 관련 서비스업], [인
터넷 방송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함.

나. 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구분	주식회사 에스비에스네오파트너스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아이앤엠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000주	20,000,000주
1주의 금액	500원	500원
분할당시발행주식수	2,000,000주	2,000,000주
자본금	1,000,000,000원	1,000,000,000원

다. 상법 제530조의 9에 관한 사항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전의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므로, 채
권자보호절차를 별도로 취하지 않음

2. 분할진행경과

구분	일자
분할결정 이사회결의일	2017. 06. 22.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17. 07. 31.
분할기일	2017. 08. 01.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일	2017. 08. 04.

3. 기타: 분할등기예정일은 2017. 8. 7.임

2017년 8월 4일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콘텐츠허브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82, 15,16층(상암동, 에스비에스프리즘타워)
대표이사 유 종 연